

대전지방법원 2024. 8. 28 선고 2024가단2272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8. 28.

## 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지분 9분의 2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, 2에 대하여 2021. 12. 7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계약은 6,126,08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,126,0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피고와 소외 C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, 4, 5에 대하여 2021. 12. 7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계약은 소외 C의 지분 9분의 2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4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 중 소외 C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의 지분 9분 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. 12. 10. 접수 제112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5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박우근

## 별지1

## 부 동 산 의 표 시

1. 충청남도 청양군  대 371㎡
2. 동 소  전 756㎡
3. 동 소  답 797㎡
4. 동 소  답 1914㎡ (지분 15분의 13)
5. 동 소  답 149㎡

- 이 상 -

별지2

## 청 구 원 인

## 1.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

가. 소외 D 주식회사는 소외 C에 대하여 2018. 9. 4. 명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 124569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을 득하였습니다.

나. 그 후 D은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위 C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C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 1245693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 하여 집행력있는 승계집행문부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금 58,528,900원 및 그 중 금 57,024,430원에 대하여 2018. 9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## 2. 사해행위위 성립

## 가.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

소외 C는 2021. 12. 7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어머니인 피고와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청양동기소 2021. 12. 10. 결수 제 112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## 나. 소외 C의 무자력

소외 C는 원고에 대한 채무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

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본인의 무자력 상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악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.

#### 다. 사해의사

소의 C는 위와 같이 다역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, 소의 D는 주식회사에게 대어금 채권을 갖지 못해 이미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피고에게 처분하였습니다. 이러한 행위는 소의 C가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, 따라서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.

피고는 소의 C의 모친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,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 또한 사해의사가 있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.

#### 라. 추가부동산에 대하여

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문서송부촉탁서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4, 5번 부동산에 대해서도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목록기재 4, 5번 부동산을 추가로 변경 신청합니다.

### 3. 결어

#### 1) 원상회복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의 [C]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, 피고와 소의 [E]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고,

#### 2) 가액배상

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, 수익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,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 바, 이 사건의 경우 2021. 12. 1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사해행위 성립이후, 소의 [F] 조합의 근저당권설정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으로,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인 금6,126,088원(공시지가 금 27,567,400원 \* 상속지분 2/9)을 청구합니다.

